WTO/DDA 농업협상동향과 주류업계 과제

최 영 남 과장 기획조사팀

1. 개 요

WTO/DDA 농업협상은 1947년 GATT 설립이후 9번째 다자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이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로는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이다. DDA협상 이전의 라운드는 1986~93년 까지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이었으며, UR 협상결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어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Rule-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의 기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출범을 공식선언하였다. 동 각료회의 전까지 다자무역협상은 '뉴라운드(New Round)'로 불렸으나,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하여 '개발'이 포함된 DDA로 명칭되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협상의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모든 의제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 · 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각 의제에 대한 협상결과를 모두 수용하는 협상방식(일괄타결방식, Single undertaking)을 채택하였다.

당초 2004년 12월 협상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수립하였으나 2004년 8월 세부원칙 기본골격에 합의 후 회원국간 의견대립으로 협상이 중단되는 고비를 겪기도 하였고, 현재는 2008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표 1〉 다자무역협상

순위	라운드 명칭	협상연도	참여국가수	순위	라운드 명칭	협상연도	참여국가수
1	제네바(Geneva)	1947	23	6	케네디(Kennedy)	1962~67	48
2	애너시(Annecy)	1949	33	7	도쿄(Tokyo)	1973~79	99
3	토르퀘이(Torquay)	1950	34	8	우루과이(Uruguay)	1986~93	123
4	제네바(Geneva)	1956	22	9	DDA	2001~현재	148
5	딜론(Dillon)	1960~61	45				

· 자료: 최낙균 외(2002), WTO(http://www.wto.org/)

이 글에서는 WTO/DDA 농업협상의 주요 협상의제중 주류산업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농업부분 중 시장접근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DDA 농업협상의 최근동향

2004년 8월 기본골격(Framework) 합의이후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세부원칙(Modality)마련에 실패해 오다가 2007년 7월 농협상그룹 팔코너(Falconer) 의장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정리하여 세부원칙 초안을 발표하면서 핵심쟁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중이며 2008년 2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세부원칙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현재에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각 그룹별(참고 1) 회의 및 고위급 또는 각료급 회의가 진행중에 있으나 여전히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 UR · DDA 협상 추진경과 비교

구 분	UR협상	DDA협상
협상출범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합의추진과정	1990년 6월 (1차 초안 제시) 1990년 12월 (브랏셀각료회의 결렬) ※ 브랏셀 각료회의 결렬 이후 던켈총장에게 협상진전을 위한 막후 절충 권한 부여 1991년 12월 (던켈총장 초안제시)	2003년 2월 (하빈슨의장 초안 제시)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결렬) 2004년 8월 (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 시한연장) ※ 홍콩 각료회의 시한내 타결 실패이후 라미총장에게 협상진전 역할 부여 2006년 7월 (라미총장 협상 일시중단 선언) 2006년 11월 (라미총장 협상재개 선언) 2007년 7월 (농업협상그룹 팔코너의장 세부원칙초안 제시) 2008년 2월 (농업협상그룹 팔코너의장 세부원칙 수정안 제시)
미 · EU 합의 (블레어하우스합의*)	1992년 11월	–
미 행정부 TPA 연장	1993년 1월	– (2007.7.1 미 TPA 만료)
이행계획서 최종제출	1994년 3월	–
협 상 종 결	1994년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	–

주) '블레어하우스 합의' 란 미국과 EU가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에 모여 농업 국내보조 합의를 도출한 것(블루박스 보조 등 합의)으로 UR 타결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

· 자료 : 농림부 국제협력과(2008.2) 농업협상 동향

3.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안) 중 시장접근 분야 주요내용

농업협상은 브라질 · 중국 · 인도 등의 수출개도국 그룹 G-20, 한국 · 일본 · 스위스 등의 수입국 그룹 G-10, 미국과 EU의 선진국 그룹 등 4개 그룹이 협상을 주도하는 협상구도를 보이고 있다.

〈참고 1〉 DDA 농업협상 주요 그룹 현황

구 분	대 상 국 가	기 본 입 장	비 고
G6	미국, EC, 브라질, 인도(이상 G4국가) 일본, 호주		농업협상 주요국그룹
G10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 농산물 수입국 입장 대변 – 관세상한 설정 반대 – 관세감축에 있어 신축성 주장	수입국 그룹
케언즈그룹	캐나다,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 농산물 수출국 입장 대변	수출국 그룹
G20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중국, 칠레, 과테말라, 인도, 멕시코, 파라과이, 필리핀, 남아공, 태국, 쿠바,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우루과이, 짐바브웨	• 개도국 입장 대변 – 선진국의 국내보조 대폭 감축, 수출보조 철폐 – 개도국 우대 강화	강경 개도국그룹
G33	한국, 중국, 도미니카,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케냐, 마다가스칼,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터키, 우간다, 베네수엘라 등	• 개도국 입장 반영 – SP 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 수입제한제도(SSM)에 중점	특별품목 그룹
G90	African, Carribean and Pacific Group(ACP), Least Developed Countries(LDCs), Africa Union(AU) 국가들로 구성(모리셔스, 남아공, 이집트 등)	•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부국가 포함	
ACP그룹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79개 국가	• 개도국 특혜관세 혜택 유지 주장	

〈표 3〉 관세감축 예시

구분	선 진 국		개 도 국	
	구 간 경 계	감 축 율	구 간 경 계	감 축 율
1구간	0~20%	[48]~[52]%	0~30%	[32]~[35]%
2구간	20~50%	[55]~[60]%	30~80%	[37]~[40]%
3구간	50~75%	[62]~[65]%	80~130%	[41]~[43]%
4구간	75%이상	[66]~[73]%	130%이상	[44]~[49]%

※ [ ]는 예시 수치로 추후 확정

• 관세감축

농업협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시장접근(Market access)분야의 관세감축방식으로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구분하여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는 구간별 감축방식(tiered formula)을 채택하고 관세항목 중 적절한 수의 민감 품목(Sensitive products)의 지정을 허용하며, 민감 품목은 품목별로 시장접근물량(TRQ)의 증량과 관세감축의 연계를 통해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 하기로 하였다.

세부원칙 초안에서 관세율을 4개구간으로 나누고, 관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감축률이 커지는 구간별 감축방식을 제시하였고 수정안에서 세부 수치 및 선진국 이행기간 5년, 개도국 이행기간 8년,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 [54]%, 개도국 평균 감축률 36%를 제시하였다.

• 민감품목

각 국가별로 일부 중요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민감품목은 일반품목 감축율 대비 1/3, 1/2, 2/3 만큼 감축을 적게 할 수 있으며, 그 보상으로 TRQ를 증량하여야 하는 방안과 증량수준 선진국은 소비량대비 [3]~[6]%, 개도국은 [2]~[4]% 수준을 논의중이다. 또한 수정안에서 관세감축후 100%이상 관세 비중이 4%이상일 경우 민감품목의 TRQ [미정] % 추가 증량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 특별품목

개도국 우대의 일환으로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개발 필를 감안하여 일부품목을 특별품목(SP: Special Products)으로 지정하고, 일반품목에 적용되는 관세감축율보다 낮은 감축율이 적용되도록 논의하고 있으며 수정안에서는 특별품목 개수는 최소 8%, 최대 [12]~[20]% 적용 및 특별품목을 2개구간으로 분리하고 구간별 평균감축률은 각각 [8]~[15]%, [12]~[25]% 적용 방안도 제시되었다.

또한 감축면제(전체 세 번의 [8]%)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면제 불가 대안도 동시에 제시되어 논의되고 있다.

• 열대작물

그동안은 열대작물을 수출하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반 품목보다 더 큰 감축율을 적용하자는 의견만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두가지 방안과 그 품목을 예시하였다.

첫째방안은 무세화와 85% 감축(관세25%기준), 둘째방안은 무세화와 [66]~[73]%(관세 10%기준) 감축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과 적용품목에 대해서는 논의중에 있으나, 예시품목에 쌀, 고추 등 우리나라에서 매우 민감한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 2〉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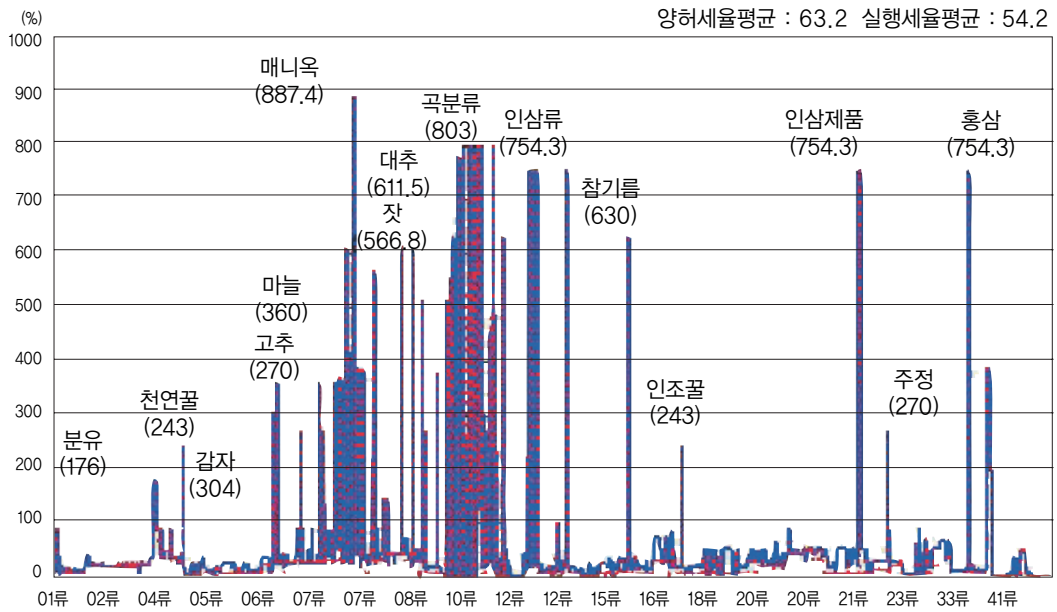

4. 향후 전망 및 우리나라의 쟁점별 대응전략

라미 WTO 사무총장이 2008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발표는 하였으나 현재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점이 많으며 협상방식이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이여서 농업부문 외에도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 등이 동시에 완료되어야 하며 또한 미국 대선 등 각국의 자국내 정치적 영향까지 겹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2008년 말 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며 우리측 입장과 유사한 수입국그룹(G10), 개도국 그룹(G33)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부원칙 타결시 본격 진행될 양자협상에 대비 국별 · 품목별 입장 및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국별 양허협상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에 있다.

5. 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WTO/DDA 농업협상에서 주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기 때문에 분류상 농산물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산품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이 200%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주류부문의 관세율은 맥주, 소주, 위스키등 대부분의 주류가 20%에서 30%수준으로 공산품의

관세율 수준보다는 월등히 높기는 하지만 농산물의 관세율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 된다.

금번 WTO/DDA 농업협상에서는 지난 UR 협상에서의 실질적인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고관세율에는 고감축을 저관세율에는 저감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류부문의 관세율이 최고 30%인 점을 감안한다면 WTO/DDA 농업협상에 따른 주류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사료되나 협상 종료 이후 각국과의 FTA 등에 따라 점차 무관세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는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류제조용 발효주정의 경우 WTO/DDA 농업협상이 타결된다면 협상결과에 따라 양허세율의 인하와 시장접근물량의 증가가 결정되며 그 폭은 현재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나라가 개도국 또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개방수준이 결정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제조용 발효주정이 일반품목으로 분류되느냐 또는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도 개방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본회에서는 WTO/DDA 농업 협상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협상 당사국들의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주류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업계에게 알려왔으며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WTO/DDA 농업 협상시 제시되는 안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다.